공개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294, 2021. 11. 11.]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피항소인)】

피고 1. G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H 피고 3. 주식회사 I

【변호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선고 2018가합558076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1. 11.

【주 문】

- 1. 원고 A, B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원고 C, D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항소, 원고 E, F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원고 A, B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 B이, 원고 C, D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C, D이, 원고 E, F과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E, F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내역을, 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내역을,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는 원고 C에게 별지 3 기재 내역을, 원고 D에게 별지 4 기재 내역을,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고 한다)는 원고 E에게 별지 5 기재 내역을, 원고 F에게 별지 6 기재 내역을 각 공개하라(원고들은 각 이 법원에서 공개청구에 관한 청구취지 일부를 취하하였다).
- 나.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피고 H는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피고 I는 원고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각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각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각 원고 부분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아래에서 1, 2행 중 "피고 G에 위 정보집합결합물을 제공하였다."를 "2017. 7.경 직접 주최한 2017년 K 대회에 이용하였다."로 고친다.
- 제6면 아래에서 1행 중 "피고 I에"를 "P에"로 고친다.
- 제7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 이후인 2020. 2. 4.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에 따라정보통신망법이 2020. 6. 9. 법률 제17358호로 개정되면서 제30조가 삭제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조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확인, 열람, 공개청구

1)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한 주장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확인해주거나 원고들의 열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구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주장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은 구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제공해주거나 원고들의 열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상 권리에 기한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확인할 권리는 이 사건 각 계약 자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고들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소비자로서 알 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한 주장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소비자에게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비자로서 알 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위 확인, 열람, 공개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의 확인, 열람, 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위 확인, 열람, 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또는 민법 제751조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확인, 열람,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 1) 별지 2의 4항을 제외한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 부분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1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제2호),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제3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제4호),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제5호)를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등으로 정의하고, 제2호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다.
-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를 수행한 대상인 이 사건 각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비식별조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가공, 편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개인 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¹⁾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 즉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3240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 다23250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 중 별지 2의 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4조 제3호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조항이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같은 법시행령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추상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제3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제4호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제5호의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정되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특히 정보주체가 위 제3, 4, 5호의 권리들을 적시에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법의 공백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확인, 열람, 공개를 거절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 G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은 피고 G에 J 주식회사 또는 Q가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A, B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열람, 제공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 G은 2018. 4. 18. 원고 A에게, 2018. 7. 24. 원고 B에게 "당사는 2016년 과기정통부의 'R'을 위한 플래그쉽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이를 수행하면서 당시 과제수행을 위하여 고객의 이용정보를 이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에 맞추어 비식별화 한 바 있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는 재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정보로 만드는 것을 정하고 있어서 그에 대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에서는 국책수행 과제를 위한 정보의 대상을 '정보분석에 대한 추가동의(선택적 동의)'를 한 고객의 정보로 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확인해 본 바 원고 A, B은 정보분석에 대한 추가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대상 정보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식별화 작업 결과 K-익명성 값이 110,000 정도로 나온바 이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비식별 정보는 비식별 처리가 시작되는 때부터 처리대상이 되는 원천 정보들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고객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을 보낸 사실, 이후 피고 G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정보는 모두 삭제 처리되어 원고 A, B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판결 별지 9-1, 9-2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항목이 처리된다고 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H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 D이 피고 H에 N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C, D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열람, 제공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 H는 2018. 8. 7.경 원고 C, D에게 각각 "N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고객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없고, 자사의 고객정보와 N의 고객정보가 비식별화/익명화 되어 M기관에 각각 제공되었고, 이는 행정차지부에서 수립한 프로세스에 따른 것이다. (예) 자사 고객 정보 익명화: 서울시 거주, 30대 후반여자, 뮤직 부가서비스 이용"이라는 취지의 답변 메일을 보낸 사실, 이후 피고 H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정보는 모두 삭제 처리되어 원고 C, D의 개인정보가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판결 별지 10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항목이처리된다고 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다.

(3) 피고 I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 제17호증의 5, 6, 을다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 F이 피고 I에 P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열람,

제공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 I는 2018. 8. 20. 원고 E, F에게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당사 고객의 개인정보에서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여 비식 별 전문기관인 O에 제공한 바가 있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용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가 이드라인 제69면 참고)"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또한 피고 I는 2017, 1.경 신청기관인 P와의 정보집합물 결합을 위하여 고객 약 15,679,439명의 개인정보 중 약 89%에 해당하는 13,961,710건의 정보를 이 사건 가이 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친 후 정보결합 전문기관인 O에 제공하였는데,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모든 정보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 I가 정한 값[예컨대 범주화된 동일한 정보 (1111111111)의 수치가 5개 등]에 이르지 못한 정보들은 버려지고 나머지 정보들만 O에 제공되었기에, 피고 I로서는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 중 어떤 고객의 정보가 O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O은 그 중 약 5.1%에 해당하는 712.842건의 결합정보(식별자인 임시대체키는 삭제된 것)를 P에 제공한 사실, 더 군다나 피고 I는 O으로부터 결합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P에 결합 정보가 제공된 후 보관 중이던 비식별 정보 일체를 파기한 사실, 이에 피고 I는 원고 E, F의 개인정보가 비 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객(무선) 중 약 89%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가 이 루어졌으므로 당시 원고 E. F의 개인정보도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다만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판결 별지 11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항목이 처리된다고 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확인해 주었고,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 항목이 무엇인지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확인, 열람, 공개청구를 거절하거나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마) 결국 원고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한 위 항목들에 관한 확인, 열람, 공개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별지 2의 4항 부분

원고 B은 피고 G에 대하여 만약 피고 G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를 하였다면 자신이 그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동의하였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인, 열람, 공개를 구한다.

갑 제17호증의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은 원고 B에게 원고 B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한 현황(을가 제3호증)을 이미 공개한 사실, 원고 B이 피고 G에 별지 2의 1 내지 3 기재 항목들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본인이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열람,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 G은 2018. 7. 24. 원고 B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책수행과제를 위한 정보의 대상을 '정보분석에 대한 추가동의(선택적 동의)'를 한 고객의 정보로 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원고 B이 정보분석에 대한 추가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대상 정보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³⁾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 조치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학술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⁴⁾"고 답변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 G은 원고 B에게 위와 같이 본인이 정보분석에 대하여 추가동의를 하였기에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로써 별지 2의 4항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의 확인, 열람,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확인, 열람,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 2)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가 된 자료 및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 피고가 위 항목들에 관한 자료 및 정보들을 파기할 당시 시행되었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호조치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그 보호조치 중 하나로 '비식별 조치 관련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였다(갑 제3호증 18면 등 참조).
- ② 위 파기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 법령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식별 조치 후 그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다.
-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정보집합물과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유할 경우, 재식별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파기 조치는 해당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시켜주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고, 제1심판결 별지 9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
- 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에 관련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은닉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

4. 구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5)

가. 확인, 열람,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조문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현황'(제2호)을,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제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별지 2의 4항을 제외한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 부분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 중 별지 2의 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이 사건 각 개인정보에 대해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현황에 관한 열람 및 제공청구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를 수행한 대상인 이 사건 각 개인정보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위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가공', '편집', '이용', '제공' 등 여러 하위 개념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제2호는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의 대상을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현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processing)' 중 '가공', '편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대상이나 물건을 그 용법에 맞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 '이용(use)'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 중 별지 2의 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가 공개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의 '이용' 현황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에 의한 열람이나 제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각 비식별 조치 자체를 개인정보의 이용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제3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 중 별지 2의 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관한 원고들의 열람이나 제공요청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2의 4항 부분

앞서 본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은 별지 2의 4항에 관한 원고 B의 열람이나 제공요청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에 대한 열람, 제공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항목들의 열람,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계약상 권리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4행의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내역의"를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기한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에 대한 공개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항목들의 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6. 소비자로서 알 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8행의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내역의"를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6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비자로서 알 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한 별지 1 내지 6 기재 항목들에 대한 공개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게 위 항목들의 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 원고 C, D의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 F의 피고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B의 피고 G에 대한 각 항소, 원고 C, D의 피고 H에 대한 각 항소, 원고 E, F의 피고 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이영창 김세종

【별지 1】원고 A 정보공개청구 내역

- 1. 피고 G이 2017년 3월경 J 주식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처리한 원고 A의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
- 2. 피고 G이 2017년 6월경 I 및 L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A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3. 피고 G이 위 2항과 같이 처리한 원고 A의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

【별지 2】원고 B 정보공개청구 내역

- 1. 피고 G이 2017년 3월경 J 주식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처리한 원고 B의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
- 2. 피고 G이 2017년 6월경 I 및 L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B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3. 피고 G이 위 2항과 같이 처리한 워고 B의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
- 4. 위 1, 2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원고 B이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별지 3】원고 C 정보공개청구 내역

- 1. 피고 H가 2017. 6.경 N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C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2. 피고 H가 위 1.항과 같이 처리한 원고 C의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별지 4】원고 D 정보공개청구 내역

- 1. 피고 H가 2017. 6.경 N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D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2. 피고 H가 위 1.항과 같이 처리한 원고 D의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별지 5】 원고 E 정보공개청구 내역

- 1. 피고 I가 P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E의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2. 피고 I가 위 1항과 같이 처리한 원고 E의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

【별지 6】원고 F 정보공개청구 내역

- 1. 피고 I가 P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원고 F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2. 피고 I가 위 1항과 같이 처리한 원고 F의 개인정보 항목별 내용. 끝.
- 1)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39조의3의 각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개인정보 이용, 수집에 대한 동의에 앞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될 것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얼마인지',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호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이후 피고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조 제3호가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 2)위 '정보분석에 대한 추가동의'는 을가 제2호증(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의 제6항[고객 혜택 제공을 위한 정보 이용 관련 동의(선택동의)]과 같은 내용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는데(피고 G의 2019. 6. 9.자 준비서면 4면 참조), 위 항에는 피고 G이 '이동전화 서비스와 피고 G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서비스간, 개인정보의 결합/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맞춤/연계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고객이 동의한다는 내용 및 고객은 위 동의를 거부할 수있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피고 G이 2017년 3월경 피고 G과 J 간 데이터 결합 후 결합정보의 유효성 검증 연구(국책과제)'를 위하여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4)피고 G이 2017년 6월경 J 및 L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결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하였고, 이는 '2017 K 대회 개최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및 피고 G, J, L 주식회사간 공통고객 성향분석'을 결합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 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4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5)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가 삭제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는 2017년경 구 정보 통신망법 제30조가 시행될 당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개의무가 있었고, 따라서 그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